

하 동 군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48호 2015. 12. 28. (월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128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129호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하동군 조례 제2130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40호 「하동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16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9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106차) 23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1100호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입법예고 . 26
- 하동군 공고 제2015-1101호 하동군 장수수당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30
- 하동군 공고 제2015-1103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3
- 하동군 공고 제2015-1111호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9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28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28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대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신 설></p> | <p>제5조의2(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p> <p>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대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p>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28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29호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근거한”을 “따른”,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직불합의서를
군 경리관에게”를 “지급보증서를 군 재무관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기능) 1. <u>제3조에 관한 사항</u></p> <p>제14조(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생략)</p> <p>② 군 <u>경리관</u>은 각종 공사·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시 대금지급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대금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하여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에 친절도와 청렴성 제고에 기여한다.</p> <p>제15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u>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지불합의서를 군 경리관에게 제출토록 하여 공사비 미수급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u></p> | <p>제6조(기능) 1. <삭 제></p> <p>제14조(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군 <u>재무관</u>은 ----- ----- ----- ----- -----.</p> <p>제15조(지역건설산업 보호) ----- ----- ----- ----- <u>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군 재무관</u>----- ----- -----.</p> |

(6) 제 448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28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30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군수는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에게 임차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대여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에 등록된 농업법인, 작목반 등에서 공동작업을 위해 대여할 경우 대여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에게 임대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번기 등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입고 및 출고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⑤ 군수는 임차인이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8) 제 448 호

[별표 1]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단위 :원/1일(8시간 기준)]

| 기 종 명 | 규 격 | 구 입 가 격 | 1일 사용료 | 비고 |
|---------------------|-----------------|--------------------------|--------------------------|----|
| 전기종 및 작업기 | 자주식 및 부착형 | 100만원 미만 | 5,000 | |
| | “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15,000 | |
| | “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30,000 | |
| | “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45,000 | |
| | “ | 2,0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75,000 | |
| | “ | 3천만원 이상 | 구입가격의 0.3%적용 (천원단위절사) | |
| 적용제외 기종 및 작업기 | 제초기 | 승용자주형 | 60,000 | |
| | | 보행자주형 | 30,000 | |
| | 휴림복토기 | 1골 | 30,000 | |
| | | 2골 | 40,000 | |
| | 논두렁조성기 | | 30,000 | |
| | SS기 | | 45,000 | |
| 사다리 | 1조 | 5,000 | | |
| 콩정선작업기 | | 1포대(40kg 기준) : 1,000원 | | |
| 임대농기계 운반비 | | 전지역 40,000원/왕복 | | |

[별표 2]

농업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임대제한 기간(제7조제5항 관련)

| 임대조건 위반사유 | 사용제한 기간 | | | | 비고 |
|--|---------|-----|-----|----|----|
|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1회 | 2회 | 3회 | 4회 | |
|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연락두절 포함) | | 1회 | 2회 | 3회 | |
| 농기계를 청소 및 세척을 하지 않고 반납할 경우 | 2회 | 3회 | 4회 | 5회 | |
| 농기계를 무단으로 개조하였을 경우 | | | | 1회 | |
| 농기계 사용 중 파손하여 3일 이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1회 | | 2회 | 3회 | |
|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 | 1회 | 2회 | |
| 다른 사람의 농작업을 하였을 경우(무상, 유상 포함) | | | 1회 | 2회 | |
| 농기계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 | 1회 | 2회 | |
| 농기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 | 1회 | 2회 | |
| 그 밖에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지시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회 | 4회 | 6회 | 8회 | |

※ 사용제한 횟수의 누적합산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별표 1]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 징수기준(현 행)

[단위 :원/1일(8시간 기준)]

(단위 : 원)

| 기종명 | 규격 | 구입가격 | 1일 사용료 | |
|--------------------|-----|--------------------------|--------|--------|
| | | | 부속작업기 | 엔진부착형 |
| 전기종 (부속 작업기) | 작업기 | 100만원 미만 | 5,000 | 7,500 |
| | | 500만원 미만 | 10,000 | 15,000 |
| | "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20,000 | 30,000 |
| | "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30,000 | 45,000 |
| | " | 2,000만원 이상 | 50,000 | 75,000 |

※ 자주형 엔진 부착형 원동기와 작업기 동시 계산 시 총금액 환산

[별표 1]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표(개정안)

[단위 :원/1일(8시간 기준)]

| 기 종 명 | 규 격 | 구 입 가 격 | 1일 사용료 | 비고 |
|---------------------|-----------------|--------------------------|--------------------------|----|
| 전기종 및 작업기 | 자주식 및 부착형 | 100만원 미만 | 5,000 | |
| | “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15,000 | |
| | “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30,000 | |
| | “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45,000 | |
| | “ | 2,0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75,000 | |
| | “ | 3천만원 이상 | 구입가격의 0.3%적용 (천원단위절사) | |
| 적용제외 기종 및 작업기 | 제초기 | 승용자주형 | 60,000 | |
| | | 보행자주형 | 30,000 | |
| | 휴림복토기 | 1골 | 30,000 | |
| | | 2골 | 40,000 | |
| | 논두렁조성기 | | 30,000 | |
| | SS기 | | 45,000 | |
| 사다리 | 1조 | 5,000 | | |
| 콩정선작업기 | | 1포대(40kg 기준) : 1,000원 | | |
| 임대농기계 운반비 | | 전지역 40,000원/왕복 | | |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28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1140호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일”을 “10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4월 1일”을 “2월 10일”로 한다.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4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8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17) 제 448 호

[별지 제31-1호서식]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 | |
|---|---------------------|
| 년도 | 회계 |
| 고지번호 | 20xx-xxxxxxx-xxxxxx |
| (조직) | |
| (정책) | (단위) |
| (세 부) | (통계목) |
| (편성목) | |
| 금 원(금 원) | |
|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 | |
| 지출금 반납 가상계좌 | |
| xx은행 | xxxx-xx-xxxxxxxxxx |
| (반납자) 귀하 | |

| | |
|--|---------------------|
| 년도 | 회계 |
| 고지번호 | 20xx-xxxxxxx-xxxxxx |
| (조직) | |
| (정책) | (단위) |
| (세 부) | (통계목) |
| (편성목) | |
| 금 원(금 원) | |
|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 |
| (반납자) 성명 | |
| 지출금 반납 가상계좌 | |
| xx은행 | xxxx-xx-xxxxxxxxxx |
| 지출원 귀하 | |

| | |
|-----------------------------|---------------------|
| 년도 | 회계 |
| 고지번호 | 20xx-xxxxxxx-xxxxxx |
| (조직) | |
| (정책) | (단위) |
| (세 부) | (통계목) |
| (편성목) | |
| 금 원(금 원) | |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 | |
| 지출금 반납 가상계좌 | |
| xx은행 | xxxx-xx-xxxxxxxxxx |
| (반납자) 귀하 | |

<작성요령> 주서로 기재

[별지 제62호서식]

자 금 운 용 기 록 부

| 연월일 | 적요 | 기관명 | 지 | | | | | 환 | | | | | 잔액 | 비고 | |
|-----|----|-----|----------|------|----------|----------------|----------|----------|------|----------|----------------|----------|----|----|--|
| | | | 정기 예금 | MMDA | 기타 예금 | 차입 또는 대여 | 계 (1) | 정기 예금 | MMDA | 기타 예금 | 차입 또는 대여 | 계 (2)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비교란에는 환입여부를 표시

하 동 군 공 보

(18) 제 448 호

[별지 제81호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 회계 별 | 일계 누계 | 세 입 | | | | 자 배 금 정 액 ② | 세 출 | | | | 전 용 ④ | 잔 액 ①-②- ③-④= ⑤ |
|---------|----------|-------------|----------------------------|----------------------------|-----------------------|----------------------------|-------------|-------------|----------------------------|-------------|-------------|-----------------------------|
| | | 수 입 액 | 과 오 납 반 환 액 | 과 목 경 정 액 등 | 차 액 잔 액 ① | | 지 급 액 | 반 환 액 | 과 목 경 정 액 등 | 차 액 ③ | | |
| | 일계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금 운 용 | | | 비 고 |
|---------|-------|--------------|-----|
| 예금등 ⑥ | 환 입 ⑦ | 공금잔액(⑤-⑥+ ⑦) | |
| | |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지출원

<유의사항>

금고에서는 지출원으로부터 통상(송금, 집합)지급명령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 미지급금으로 취급

하동군 고시 제2015-99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106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23.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화평안길 7-2 외 16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별 지 참 조(17건)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2.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24) 제 448 호

| 업무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346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하평안길 7-2 | 20151223 | 20070618 | 하평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산 92-2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매화골먹점 길 268-24 | 20151223 | 20070618 | 매실이 많이 나는 마을특 성에 먹점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763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개치미동길 130 | 20151223 | 20070618 | 개치와 미동의 마을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163-5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이곡길 117-1 | 20151223 | 20070618 | 이곡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번호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상평1길 6-17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산복벚꽃길 9-2 | 20151223 | 20070618 | 현재 산복벚꽃길로 불리워 져 도로명을 산복벚꽃기로 명명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산 96-1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길 244-101 | 20151223 | 20070618 | 이명산의 달운재 밑의 마 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 을이름 반영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363-11 |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수척길 52-2 | 20151223 | 20080402 | 수찰이라는 물의 양을 알아 볼수 있다는 순수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여 수척이라 불리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월횡리 157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월횡길 64-19 | 20151223 | 20080402 | 월봉산 아래 위치하였고 도덕천이 월횡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산 116-5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장환길 104-122 | 20151223 | 20080402 | 장환이라는 옛지명 반영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 1182-2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전대2길 59-1 | 20151223 | 20080402 | 법정리명에 일련번호방식 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1486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내도청도길 126-2 | 20151223 | 20090302 | 내도와 청도의 자연마을 이름을 합성하여 내도청도 길로 명명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452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160 | 20151223 | 20090702 | 행정구역명(옥종+수곡면) 활용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28-11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830 | 20151223 | 20090702 |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 |

하 동 군 공 보

(25) 제 448 호

| 업무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59-14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세종태실 로 631-1 | 20151223 | 20090702 | 세종태실지 명칭사용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산 2-3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1315 | 20151223 | 20090702 | 정기룡장군 추모사당을 지 나가는 도로로 지역의 역사 성 반영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산 92-4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원로 87 | 20151223 | 20090702 | 행정구역명(고이리+원동마 을) 활용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145-1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943-1 | 20151223 | 20090710 |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 |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 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2.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을 하려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경우와 보건소 등과 같은 유사명칭 사용자에게 대한 과태료 금액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과태료 부과 · 징수 주체 규정(안 제2조)

나.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규정(안 제3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6년 1월 10일까지 하동군보건소(전화 :880-6612, 6615 FAX : 880-6620, e-mail : nam0108@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건 | 비고 |
|------------|-----|----|
| | | |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과태료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수가 부과 · 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의 규정 외 과태료 관련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최초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 |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1호 | 100 | 200 | 300 |
|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호 | 100 | 200 | 300 |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2. 제안 이유 : 보건복지부 지침(기초연금 유사성격의 급여·수당 신설 자체 및 폐지 권고 등)과 관련하여 기초연금과 유사 성격을 띤 장수수당 지급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절감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코자 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함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1월 11일까지 하동군(참조 : 주민복지과, 전화 880-2334, FAX 880-2349, h8611021@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건 | 비고 |
|------------|-----|----|
| | | |

하 동 군 공 보

(32) 제 448 호

(붙임)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5-1103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조례 제6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의 적용례와 특례를 부칙에 신설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의 주민지원 협의체에 관한 규정은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부터 적용하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1생활 폐기물처리장(하동군 금성면 해안로 198)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지원협의체는 사업 종료 시까지 금남면, 금성면 주민대책위원회로 함.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1월 12일까지 하동군(참조 : 환경보호과, 전화880-2851 FAX 880-2569, e-mail tigerbelt@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34) 제 448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건 | 비고 |
|------------|-----|----|
| | | |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규정은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1생활폐기물처리장
(하동군 금성면 해안로 198)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지원협의체는 사업 종
료 시까지 금남면, 금성면 주민대책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부칙</p> <p><신 설></p> <p><신 설></p> | <p>부칙</p> <p>제2조(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규정은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1생활폐기물처리장(하동군 금성면 해안로 198)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지원협의체는 사업 종료 시까지 금남면, 금성면 주민대책위원회로 한다.</p> |

관 련 법 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 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 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지원협의체는 영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정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회 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추천한 마을별 주민대표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면장 및 업무담당과장
4.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 ② 지원협의체의 운영은 영 제18조에 따른다.
- ③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5-1111호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차량(개인택시, 용달화물)의 차고지의 밤샘 주차 시 단속될 수 있는 불합리한 행정처분 방지

3. 주요 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수정(안 제2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
- 면제대상의 단서조항 삭제(안 제3조)
 - 단서조항 : 주차장 또는 차고지의 주차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1월 14일까지 하동군(참조 : 건설교통과, 전화880-2293, FAX 880-2509, e-mail pjh47@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동 군 공 보

(40) 제 448 호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건 | 비고 |
|------------|-----|----|
| | | |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을 “ 「화물자동
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로 한다.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p> |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 조 제 3 호 ----- ----- -----</p> |
| <p>제3조(면제대상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단,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여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p> | <p>제3조(면제대상 등) ----- ----- ----- ----. <단서 삭제></p> |